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14.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 12. 5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850,000원으로 함(안 제3조 제1항)

III.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 본 조례안은
 -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수준을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타 시도교육위원과의 의정비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 임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200,000원” 을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u>1,200,000원</u>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u>1,850,0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범위
- 월 정 수 당 : 월 185만원(연간 2,220만원)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